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776

발의연월일: 2022. 5. 27.

발 의 자:이 용·백종헌·김병욱

김정재 · 박성중 · 강민국

배준영 · 김석기 · 이채익

박성민 · 서정숙 · 강대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매장문화재법」은 "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"를 매장문화재(埋藏文化財)로 취급하여,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.

그러나 "매장(埋藏)"의 사전적 의미인 "문어서 감춤"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 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,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·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"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"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 재로 취급하고 「문화재보호법」에 관련 규정을 신설, 정비하려는 것임. 법률 제 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매장문화	제2조(정의)
재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건조물 등에 포장(包藏)되어	<u><</u> 삭 제>
있는 유형의 문화재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